장학 규정(학사과정)

(최종개정 2023.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의 장학기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장학금

제3조(구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교내장학금
 - 가.설립자장학금
 - 나.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 다.총장특별장학금
 - 라.백마장학금
 - 마.모범장학금
 - 바.자치활동장학금
 - 사.고시장학금(변경 2005.11.1)
 - 아.보훈장학금
 - 자.체육특기장학금
 - 차.외국인장학금
 - 카.교직원복지장학금
 - 타.명지사랑장학금
 - 파.근로장학금
 - 하.대여장학금
 - 거.미디어장학금
 - 너.바둑특기장학금
 - 더.세계화장학금
 - 러.학술활동장려장학금(변경 2010.3.1)
 - 머.뮤지컬특기장학금(변경 2010.3.1)
 - 버.기독도우미장학금
 - 서.연수장학금(변경 2005.11.1, 2010.9.1)
 - 어.사회진출지원장학금

저.(삭제 2021.6.1.)

처.군위탁장학금

커.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장학금(삭제 2009.3.1, 신설 2010.9.1., 2012.3.1., 변경 2023.3.1.)

터.명지다움장학금(신설 2011.3.1)

퍼.그린캠퍼스활동지원장학금(신설 2012.3.1.)

허.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신설 2013.3.1)

고.교육훈련장학금(신설 2016.9.1)

노.글로벌버디장학금(신설 2016.9.1.)

도.창업지원장학금(신설 2016.9.1)

로.성인학습자전형장학금(신설 2016.11.1., 변경 2023.3.1.)

모.학습바우처장학금(신설 2016.11.1.)

보.평생학습장려장학금(신설 2016.11.1.)

소.취업지원장학금(신설 2017.9.1.)

오.계약학과장학금(신설 2017.9.1.)

조.융합인재육성장학금(신설 2017.9.1.)

초.명지마일리지장학금(신설 2020.3.1.)

2.교외장학금

가.외부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나.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다.기타 단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제 3 장 장학생 선정

- 제4조(선정) ①교내장학생은 매 학기 초에 학기단위로 단과대학장 및 소속장이 추천한 장학대 상자를 캠퍼스별 학생처장이 심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변경 2021.12.1., 2022.3.1.)
 - ②교외장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1.학부(과)와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학부장, 학과주임교수와 단과대학 장 또는 소속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변경 2012.3.1)
 - 2.학부(과)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단과대학별 수혜비율을 참작하여 캠퍼스별 학생처장이 배정하고, 계열부장, 학부장, 학과주임교수와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변경 2010.3.1, 2012.3.1, 2022.3.1.)
 - 3.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교외기관(국고 및 지자체 제외)의 선발·추천 기준, 방법 및 절차가 명시된 자료, 교외기관과 특정학생 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교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재요청하거나, 선 발·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변경 2020.9.1.)
 - 4.교외기관(국고 및 지자체 제외)의 장학생 선발·추천기준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불법·부당함이 의심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기준을 재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9.1.)
 - 5.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경우에는 사무지원처 회계팀에 입금시킨 후 지급토록

한다.(호 번호 변경 2020.9.1.)

제5조(선정기준) 장학생 선정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변경 2007.3.1)

제 4 장 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절차) ①교내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우선하며,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부장,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실·처장, 부속기관장, 부설교육기관장 또는 연구소장에게 제출한다.(변경 2005.8.1, 2012.3.1)

②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실·처장, 부속기관장, 부설교육기관장 또는 연구소장은 장학대상 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학생처장에게 일괄 추천한다.(변경 2005.8.1., 2010.3.1, 2022.3.1.)

제7조(신청자격 · 제한) ①장학대상자는 직전학기 14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특별, 보훈, 외국인, 명지사랑 3종, 근로 및 교육훈련 장학금은 최소 취득학점 제한이 없으며, 자치활동, 고시, 체육특기, 교직원복지, 명지사랑 1종·2종·4종, 미디어및 바둑특기 장학금 대상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조명변경, 항신설 2007.3.1, 2009.3.1, 2010.3.1., 2010.9.1., 2013.3.1., 2014.9.1., 2016.9.1., 2019.7.1., 2021.6.1.)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07.3.1)

- 1.복학, 재입학생(백마, 모범장학금에 한함)
- 2.신(편)입학생(백마, 모범 및 대여장학금에 한함)
- 3.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4.근로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5.기타 학칙 및 경고사항을 위반하여 학원질서를 저해하는 학생
- 제8조(수혜기간 및 수혜범위) ①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8학기(건축학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훈장학금 1종과 국가 및 지역 재난 등 특수한 경우특별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변경 2009.3.1., 2020.9.1., 2021.9.1.)
 - ②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장특별, 모범 2종, 자치활동, 근로, 대여, 미디어, 바둑특기 2종, 세계화(재학생), 학술활동장려(재학생), 기독도우미, 연수, 사회진 출지원, 명지다움, 그린캠퍼스활동지원, 장애학생도우미, 교육훈련, 글로벌버디, 창업지원, 취업지원, 명지마일리지 장학금과 기탁 및 수혜자를 지정한 교외장학금은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변경 2005.11.1, 2009.3.1, 2010.3.1, 2011.3.1, 2011.6.1., 2011.9.1., 2013.3.1., 2014.9.1., 2015.3.1., 2016.9.1., 2016.12.1., 2017.9.1., 2018.6.1., 조명변경 및 내용변경 2020.3.1., 2021.6.1.)

- 제9조(지급방법) ①교내장학금은 해당금액에 대한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비감면 후 성적이의신청으로 인한 장학생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지급제한·회수)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변경 2007.3.1., 항번호신설 2020.9.1.)
 - 1.징계처분을 받거나 심의중인 경우
 - 2.장학금의 신청절차 또는 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3.미등록 휴학 또는 자퇴하거나 제적이 될 경우(변경 2007.3.1)
 - 4.근로장학생으로 근로 성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 ②국가 및 지역 재난 등 특수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9.1.)

제 5 장 장학위원회

- 제11조(설치)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 학생의 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구성) ①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 ②위원은 단과대학장, 교목실장, 기획조정실장, 교육지원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취창업지원처장, 사무지원처장으로 한다.(변경 2006.1.5, 2006.3.20, 2008.9.1, 2009.11.2., 2010.3.1, 2022.3.1.)
-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1.장학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2.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3.기타 장학금에 관한 중요사항
- 제14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주관 등)** ①회의는 자연캠퍼스 학생지원팀에서 주관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변경 2006.1.5., 2008.3.1, 2010.3.1, 2022.3.1.)
 - ②간사는 자연캠퍼스 학생지원팀장이 된다.(변경 2006.1.5., 2008.3.1, 2022.3.1.)
- **제16조(기타사항)** ① 장학금 목적이 아닌 부서 예산을 장학금으로 전용승인 받은 경우, 해당부 서장의 추천에 의해 지급한다.(항 신설 2020.3.1.)
 - ②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항번호 변경 2020.3.1.)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츼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츼 이 규정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최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 장학금은 제8조②항에 대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